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00

발의연월일: 2025. 5. 8.

발 의 자:서미화·박정현·이연희

이춘석 • 조계원 • 이정문

안호영 • 백선희 • 김영환

강선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"본인부담상한 제"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·장기체납자 4,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. 이는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근거가 없기 때문임. 그 결과,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,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,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,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44조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4조(비용의 일부부담) ①・②	제44조(비용의 일부부담) ①・②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		
	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		
	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		
	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		
	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		
	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		
	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.	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
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	<u>⑤</u>		
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, 본인부			
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			
방법 및 <u>제3항</u> 에 따른 가입자	<u>제4항</u>		
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			
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			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		